
2018년 6월 처장님 일본 방문 결과 보고

2018. 7.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목 차

1. 방문 개요	1
2.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	3
3.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방문	12
4. 향후 계획	18

별첨1. 일본 약황	19
별첨2. 한-일 외교관계	20
별첨3. 한-일 경제관계	21
별첨4. 일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22
별첨5. 기타 참고자료	23

1

방문 개요

1. 방문목적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법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선진국인 일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모색
- 동남아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법령정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법제한류 추진방향의 시사점 모색

< 법제처장 방문 이력(최근 10년) >

- ('08. 9.) 내각법제국 장관 면담, 업무현황 및 향후 추진업무 관련 의견교환
- ('10. 4.) 내각법제국 장관 면담, 법제 교류협력 관련 논의
- ('11. 7.) 내각법제국 장관 면담, 제1회 아시아법제정보포럼 참여 유도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 방문단 및 주요 일정

- 법제처 방문단 : 법제처장 등 총 5명

연번	성명	직위
1	김 외 숙	법제처장
2	김 의 성	기획조정관
3	김 남 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4	박 준 우	사무관
5	최 선 영	주무관

- 일자별 주요일정

날 짜	시 간	주요 일정(안)	비 고
1일차	16:15	· 한국(김포) 출발	대한항공 KE2709 (2h15m소요)
6. 6.(수)	18:30	· 일본(도쿄 하네다) 도착	
2일차	10:00	· 내각법제국 방문	
6. 7.(목)	15:00	·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3일차	10:00	·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방문	대한항공 KE0002 (2h35m소요)
6. 8.(금)	17:20	· 일본(도쿄 나리타) 출발	
	19:55	· 한국(인천) 도착	

3. 주요 논의사항

- (내각법제국) 내각에서 총리대신을 보좌하며, 정부 내 입법 총괄, 법률안·정령안(대통령령안) 및 조약안 심사,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방문
 - 법령 심사·해석·정비 등 양국 법제기관의 업무 현황 파악 및 정보 교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등 논의
-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법무성 산하의 연구·연수 기관으로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개발도상국 대상 법제 정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총합연구소 방문
 - 개발도상국 대상 법제 정비 지원 사업 관련,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 및 유관 부처(기관)와 협력체계 구축 현황 등 세부내용 논의

4. 방문 성과

① 법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험의 공유

-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본 내 법적 쟁점 및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법제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
- 법령정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법제 한류 추진방향의 시사점 모색

② 양국 법제 교류의 실질적 성과창출 기반 마련

- 기관 간 논의를 통해 향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 창출 기반 마련
- 구체적인 협력사항과 기간 등을 명시한 양해각서 등 체결을 위해 기관 간 업무, 기능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 도출 노력

1. 면담개요

- 일시/장소 : 6. 7. (목) 10:00 / 내각법제국 장관실
- 참석자
 - 법제처(5명): 법제처장,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박준우 사무관, 최선영 주무관 * 대사관 김승호 법무협력관 배석
 - 내각법제국(3명): 요코바타케 유스케(横畠 裕介) 장관, 콘도 마사하루(近藤 正春) 차장, 키무라 요이치(木村 陽一) 총무주관
- 주요 의제
 - 법령심사·법령해석·법령정비 등 양국 법제기관의 업무 현황 파악 및 정보 교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대응 현황 파악
 -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제정비 동향 등 현황 파악

2. 기관개요

- 내각에 소속되어 총리대신을 보좌하는 일본 정부 내의 공식적인 법제기관으로 1985년 『내각법제국설치법』에 따라 설립(12월 23일)
 - 정부 내 입법 총괄, 법률안·정령안(대통령령안) 및 조약안 심사,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
 - 국내 및 국제 법제의 운용에 대한 조사연구, 법제 일반에 관한 업무처리

3. 논의내용

□ 인사말씀 및 기관 간 교류·협력 필요성

- (한) 2017년 6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후, 일본에는 처음 방문하게 되었음. 법제처 방문단을 환영해주신 요코바타케 유스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법제처는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일본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 부처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지난 5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바, 법제 분야에서도 협력강화를 활성화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하였음
- (일) 처장님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며 내각법제국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국과 일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법제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함

□ 질의응답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한) 법제처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음
 -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서로서, 법령 심사·법령 정비·법령 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그리고 해외 법제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재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 14개국 24개 해외 법제기관들과 MOU·워크플랜을 체결, 상호 법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내각법제국은 내각에 소속되어 법제분야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음. 내각법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일) 내각법제국의 주요 업무는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내각과 내각총리 대신, 각 성의 대신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사무’ (제1부 담당), 내각 제출 법률안·정령안·조약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내각에 상신하는 ‘심사사무’ (제2~4부 담당)로 구분할 수 있음
 - 심사사무는, 각 부성에서 법률안 원안을 받아 헌법 또는 현행 법제와의 관계, 입법 내용의 법적 타당성, 입안 의도가 법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적·입법 기술적으로 검토함
 - 심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국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에게 국회 제출에 대한 각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그 절차 중 내각법제국은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추가 수정하여 내각에 상신함
 - 국회에서 성립되는 법률안 중 내각 제출은 약 80%이며, 2017년 법률안 75건을 제출하였고 그 중 71건이 성립됨. 또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내각이 제정하는 정령은 2017년 329건 공포되었음
- (한) 내각법제국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법제심사 및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는지,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의견조율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일) 내각법제국은 설치법에 의하여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 의견을 붙이며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내각에 상신함
 - 따라서 내각이 법률안에 대한 내각법제국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내각법제국의 양해 없이는 국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심사 과정 중 내각법제국과 각 부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일치된 안을 완성함을 담보하는 것이 내각법제국 설치법의 규정임. 단, 내각법제국이 제시하는 의견은 법제적인 내용에 한정함
 - 내각법제국 의견은 행정적으로 일정 권한을 갖지만, 최종적인 법령 헌법적합성 및 해석은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정

- (한)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내각법제국이 하고 있는 업무와 법제처가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에 놀랐음. 그중에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의견사무’ 임.
 - 정부입법은 내각법제국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의원 입법의 경우에 정부를 거치지 않고 부처가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함
- (일) 두 가지 방식이 있음. 중의원 · 참의원 내 법제국에서 의원입법 법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관련 입법의 경우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법률 시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부성 의견을 듣고 있음. 그 이유로 각 부성에서 안전에 대한 상의 요청 이 많이 들어옴. 그 과정에서 내각법제국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임
 - 두 번째는 각 부성과 내각법제국이 의견을 조율하여 안을 만들고 의원입법을 하는 방식이 있음. 물론 이러한 연락 · 조정 없이 의원 입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음. 때문에 후에 곤란한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님
- (한) 현재 법제처에서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내각법제국에서 국민의 법령 접근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 또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일) 일본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하여 1985년부터 ‘법령문 평이화 방책’ 을 각 성에 제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음. 심사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최근 통과되는 주요 법률에는 문어체 표현이 사라지는 성과를 올리고 있음
-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법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일본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대한민국이 참고할 만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 신산업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가전략특구법」,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이후 규제개혁 관련 법령 정비의 특이점이 있는지,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내각법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 (일) 규제개혁은 일본 주요 시책 중 한가지이나, 법령 형식, 내각법제국 심사 절차, 국회 제출 절차, 제출 후 국회 심의 방법 등은 일반 법률안과 동일함

- 또한 특정 규제개혁에 대해 내각법제국이 적극적으로 각 부성에 법령의 개폐 등을 권고하지 않으며, 규제개혁 관련 의견교환 및 조정은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각 부성이 중심이 되어 수행함.
- 내각법제국 입장에서는 역할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규제가 생겼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독과점을 막기 위한 이유 등으로 규제를 완화 하여 경쟁을 유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의 생성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승인 절차에 규제 관련 의견 동의를 얻어 계획을 승인하는 원스텝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규제를 점차 완화해 가는 제도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한) 마지막으로, 2013년 대한민국 「민법」 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시행되어, 법제처에서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결격조항 재정비를 추진중임

- 대한민국과 유사한 결격조항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결격조항 정비 동향과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에 대한 결격조항 정비 시 내각법제국의 역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일) 성년피후견인·피보좌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결격조항과 그 밖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것에 관련된 조치에 대한 적정화 등을 위한 ‘성년피후견인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의 적정화 등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음
 - 본 법률안은 성년피후견인 등을 특정 업무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이른바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각 제도에 관해, 심신 상실 등의 상태를 개별적,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필요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개정 내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 등을 심사한 바 있음. 본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방식 등 내각법제국의 역할은 다른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 (한) 일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령안의 내용과 의회를 통과한 법령안의 내용은 내각법제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함. 한국 법제처와 일본 내각법제국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서로간에 필요한 법령정보들을 교류하는 관계를 설정하기를 희망함
 - 두 기관 사이의 법제 교류를 위해서 MOU 체결과 같은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일) 대국민서비스의 관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고 볼 수 있음. 앞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람

□ 제6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소개 및 참석 독려

- (한) 법제처는 아시아의 법제교류 확대와 법제도 공유를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올해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함.
 - 10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장관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 (일) 2012년 ‘아시아법제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이 다양한 아시아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내각법제국에서도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참석하도록 하겠음

4. 방문사진



1. 면담개요

- 일시/장소 : 6. 8. (목) 10:00 / 법무총합연구소 소장실
- 참석자
 - 법제처(5명): 법제처장,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박준우 사무관, 최선영 주무관 * 대사관 김승호 법무협력관 배석
 - 법무총합연구소(4명): 사쿠마 타쓰야(佐久間 達哉) 소장, 국제협력부 (개도국 법 정비 지원사업 담당) 부장 및 교관 등 실무진
- 주요 의제: 개발도상국 대상 법 정비 지원 사업 현황 파악
 - 연혁 및 주요실적
 - 사업계획 수립 주기, 대상국 선정 절차 등 구체적인 추진 방법
 - 사업수행 관련 일본 내 유관 부처(기관)와 협력체계 구축 현황

2. 기관개요

- 법무성 산하의 연구·연수 기관으로 총무기획부, 연구부, 연수부 (제1, 2, 3부), 국제연합연수협력부(UNAFED) 및 국제협력부(ICD)로 구성
- 국제협력부에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양자간 협력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법제정비를 지원

3. 논의내용

□ 인사말씀 및 기관 간 교류·협력 필요성

- (한) 2017년 6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후, 일본에는 처음 방문하게 되었음. 법제처 방문단을 환영해주신 사쿠마 타쓰야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서로서, 법령 심사 · 법령 정비 · 법령 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그리고 해외 법제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재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 14개국 24개 해외 법제기관들과 MOU·워크플랜을 체결, 상호 법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법제처와 법무총합연구소는 개발도상국 대상 법제도 정비 지원이라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 (일) 법무총합연구소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법무총합연구소는 총무기획부, 국제협력부 등 7개 부로 구성되며 그 중 법제도 정비 지원 사업은 국제협력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협력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함. 현재 통합성 · 정합성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인 만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질의응답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한)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법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동남아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법 정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무총합연구소의 사례 소개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 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일) 법무총합연구소에서 국제 업무는 **국제연합 연수협력부(UNAFED)**와 **국제협력부(ICD)**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제연합 연수협력부는 **UN과 일본정부가 함께 설립**한 기관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고 국제협력부(ICD)는 2001년에 설립된 조직임
 - 일본 법정비 사업은 **1994년 베트남**의 의뢰로 시작되었음. 이후 캄보디아 등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전문부서 없이 업무를 진행했으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2001년에 부를 신설하게 되었음.
 - 현재 조직은 부장·부부장 각 1명, 교관 9명, 직원 11명임. 교관은 검찰관 6명, 판사 2명, 민사국 전문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 지원 국가는 다양하게 있지만 **일본 정부의 상황**, 함께 사업을 실시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일본국제협력기구가 안전을 채택하고 법무성이 협력하여 ‘자이카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지원 대상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는 규모가 크고 네팔, 동티모르 사업은 그에 비해 작게 운영됨
 - 중국을 대상으로는 자이카에서 변호사를 파견하여 법률 자문을 직접 실시하고 교류사업 측면에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단순한 법 정비 지원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 (일) 사업 추진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 먼저 일본에서 현지에 전문가를 장기(1~3년)로 파견하는 방법임. 현지 정보를 조사하고 현지에서 직접 문제를 분석·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법임. 또한 파견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대상 국가의 전문가를 일본에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함. 전문가가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 상 초청 기간과 인원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현재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고 추진 방법을 바꾸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효과적임
- (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함. 법과 제도는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사회 전체의 질을 개선해야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나고야대학임. 다음 세대의 수준을 높여 시간적인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한) 효과적인 법 정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고야대학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 (일) 나고야대학에서는 아시아의 7개 지역(하노이, 호치민, 뚠퐁,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에 일본 법률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어와 일본 법률을 가르치고 있음
 -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전문가로 양성하여 현지에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고야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센터 설립과 교수 파견 등 관련 예산은 정부(문부과학성)에서 지원함
- (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관 하나의 노력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유관 부처 또는 기관과 협력관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궁금함
- (일) 기관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해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함

□ 제6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소개 및 참석 독려

- (한) 법제처는 아시아의 법제교류 확대와 법제도 공유를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올해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함.
 - 10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법무총합연구소에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 (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정을 고려하여 참석하도록 하겠음

4. 방문사진



①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자 간 협의 지속 (하반기)

- 이번 기관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해 기관 실무자 간의 협력 분야 논의 등 협의 지속

② 양해각서 체결 계획 등 수립 (하반기)

- 양 기관 간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안 마련 및 세부 내용 협의 실시
- * 양해각서 주요내용(안) : 법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적교류, 법령정보의 공유,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세미나 실시 등

별첨 1. 일본 약황

【 일반사항 】

- 수 도 : 東京(Tokyo)
- 인 구 : 약 1억 2,719만명 (2018)
- 종 교 : 신도(Shintoism), 불교, 기독교
- 면 적 : 약 38만㎢(한반도의 약 1.7배)
- 행정구역 : 1都(도쿄도) 1道(홋카이도)
2府(오사카부, 교토부) 43縣(기후현, 나가노현 등)

【 정치현황 】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아키히토 천황
- 총리대신 : 아베 신조 자민당 대표
- 의회구성 : 양원제(참의원/중의원)
- 최근 정국동향
 - 2014.12.24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 2015.10.07 제3차 아베 개조내각 출범
 - 2016.08.03 제3차 아베 2차 개조내각 출범
 - 2017.11.01 제4차 아베 내각 출범

【 경제현황 】

- 국내총생산(GDP) : 4조 8,844억불(IMF, 추정치)
- 1인당 GDP : 3만8,550불(World Bank)
- 외환보유액 : 1조 2,643억불(한국은행)
- 경제성장률 : 1.6%(한국은행)
- 실업률 : 2.8%(日 총무성)
- 총교역량 : 1조3,682억불(일본무역진흥회)
 - 수출 6,972억불
 - 수입 6,710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1965년 수교
- 2017년 교역
 - 대일수출액 268.2억불
 - 대일수입액 551.3억불
 - 일본은 우리의 제3위 교역국 / 우리는 일본의 제3위 교역국
- 2017년 투자
 - 대일투자액 7.5억불
 - 대한투자액 18.4억불
- 2017년 인적교류
 - 방한일본인 231만명
 - 방일한국인 714만명
 -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 비중 2위 /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 2위
- 2017.6월말 기준
 - 재일한국인 45만 4천명
 - 재일조선인 3만 2천명

【 북한과의 관계 】

- 정책기조 : '대화와 압력' 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납치,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 추진
- 최근현황
 - 1991.1~2002.10월간 총 12회 수교회담
 - 2002.9월 / 2004.5월 고이즈미 총리 방북
 - 2006.2월 북경 일·북협약
 - 2007.3월 / 9월 일·북관계 정상화 W/G 회의
 - 2008.6월 / 8월 제1·2차 공식실무협의
 - 2012.11월 일·북 정부간 회담 재개
 - 2014.3월 / 5월 / 7월 일·북 정부간(국장급) 협의
 - 2014.7월 북측의 납치자문제 재조사 개시에 따라 일측 독자적 대북 제재 일부 해제
 - 2016.2월 북한 핵·미사일 발사 관련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 2016.12월 북한 핵·미사일 발사 관련 추가 독자제재 조치 발표

【 최근 정상간 상호방문 현황 】

- 2008.02월 후쿠다 총리, 대통령 취임식 계기 방한
- 2008.04월 대통령, 일본 공식실무방문
- 2008.07월 대통령, G8 계기 방일(삿포로)
- 2008.12월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방일(후쿠오카)
- 2009.01월 아소 총리, 공식실무방한
- 2009.06월 대통령, 일본 실무방문
- 2009.10월 하토야마 총리, 실무방한
- 2010.05월 하토야마 총리,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방한(제주)
- 2010.11월 칸 총리, G20 계기 방한
- 2010.11월 대통령, APEC 계기 방일(요코하마)
- 2011.05월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방일(동경)
- 2011.10월 노다 총리, 공식실무방한
- 2011.12월 대통령, 일본 실무방문(교토)
- 2012.03월 노다 총리,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
- 2015.11월 아베 총리,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방한
- 2018.02월 아베 총리, 평창올림픽 참석 계기 방한
- 2018.05월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방일(도쿄)

별첨 2. 한-일 외교관계

□ 역사문제 해결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 도모
 - 경제 및 인적교류 포함 실질협력 구체화 노력 지속
 - * 교역·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창출, 한·일 청소년 교류 강화 및 우리 인재의 일본 내 취업 증대 등
 - 일본 내 시민사회·학계·언론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 對日 공공외교 추진
-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현안 관리
 -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에 입각하여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
 - 여타 과거사 및 민감 현안 관리 노력 지속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도쿄, 5.9.)

- 한·일·중 3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협의 및 한반도 등 주요지역 국제정세 관련 논의
 -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정책 협력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 합의
 -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 채택 등 핵심 외교사안에 대한 주요 국가 여론주도층의 이해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대

별첨 3. 한-일 경제관계

□ 한-일 교역 동향

- 한-일 상호간 3대 교역국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65년 2.2억 달러에서 '16년 718억 달러로 326배 확대
- 최근 대일 수출 및 수입 증가세, 무역수지 확대
 - (수출) '17년 1~10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1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철강, 석유제품, 화학원료 등 주력제품 수출 증가
 - (수입) '11년 683억 달러를 정점으로 '15년까지 감소, '16년 이후 상승 중이며 '17년 1~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454억 달러

□ 한-일 투자 동향

- 일본은 한국의 2대 투자 국가로, '62년부터 '16년까지 408억 달러 투자
 - '17년 3분기까지 對 한국 직접 투자는 1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0.2% 증가
-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비스업에서 증가율이 크게 두드러짐
 - 제조업은 반도체·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비제조업은 콘텐츠(게임), 정보기술(IT), 플랫폼(IoT·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중심으로 유입
 - 고령화에 따른 일본 내수시장 한계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작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對 한국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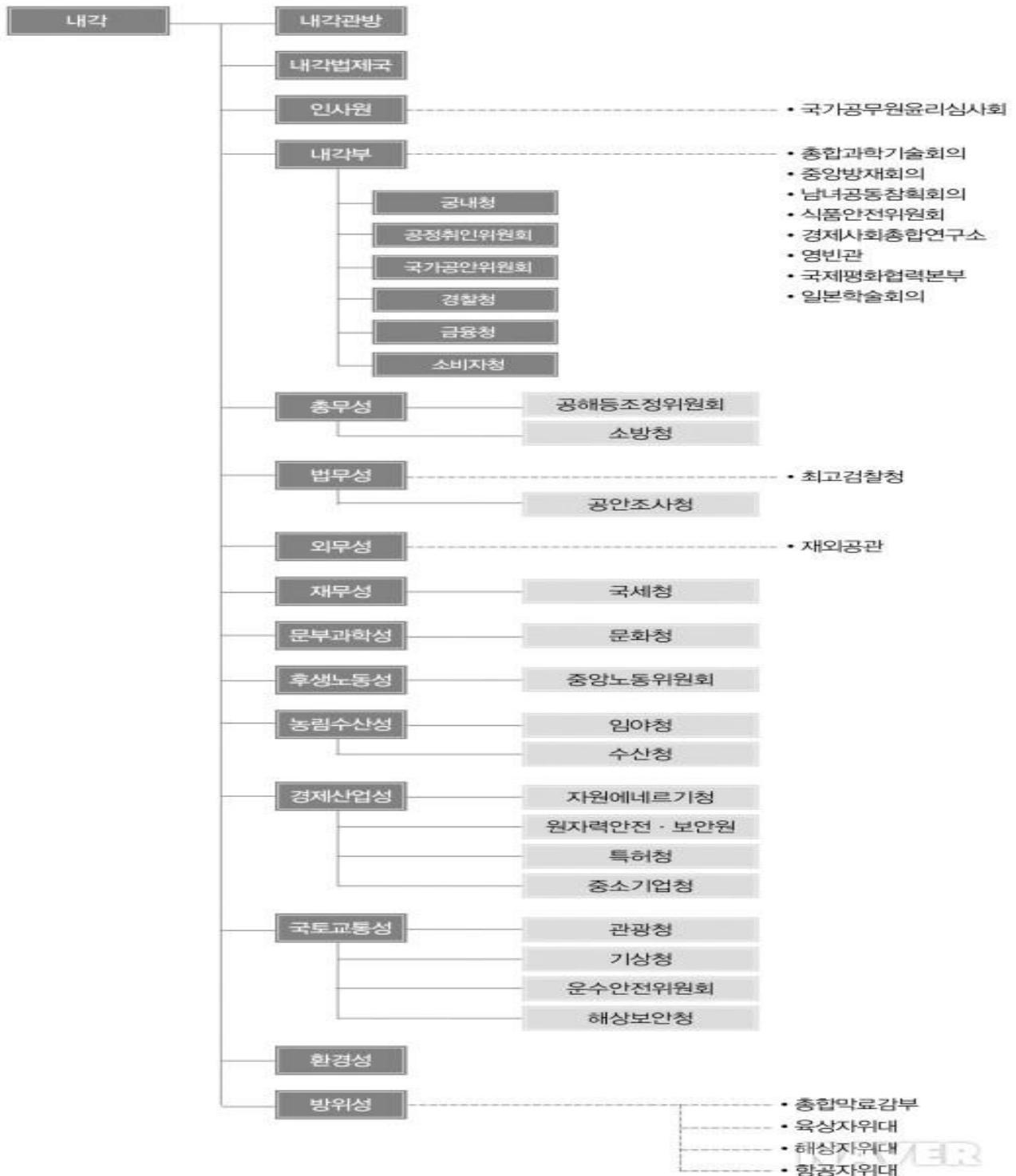
별첨 4. 일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 용어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 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
 - ‘16년부터 정부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사용하였으며, 일본이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하여 자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문건 분석 내용
 - 『일본재흥전략 2016』
 - 일본재흥전략 2016판은 부제를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붙이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해서 최근의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 규제 개혁을 위해 ‘목표역산 로드맵’, ‘지역특구’ 등의 제도 도입
 - 『일본재흥전략 2016』의 부록인 「중단기공정표」는 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목표(KPI)를 설정
 -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 변화의 동인이 되는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한편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역할 강조
 -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비전 제시

별첨 5. 기타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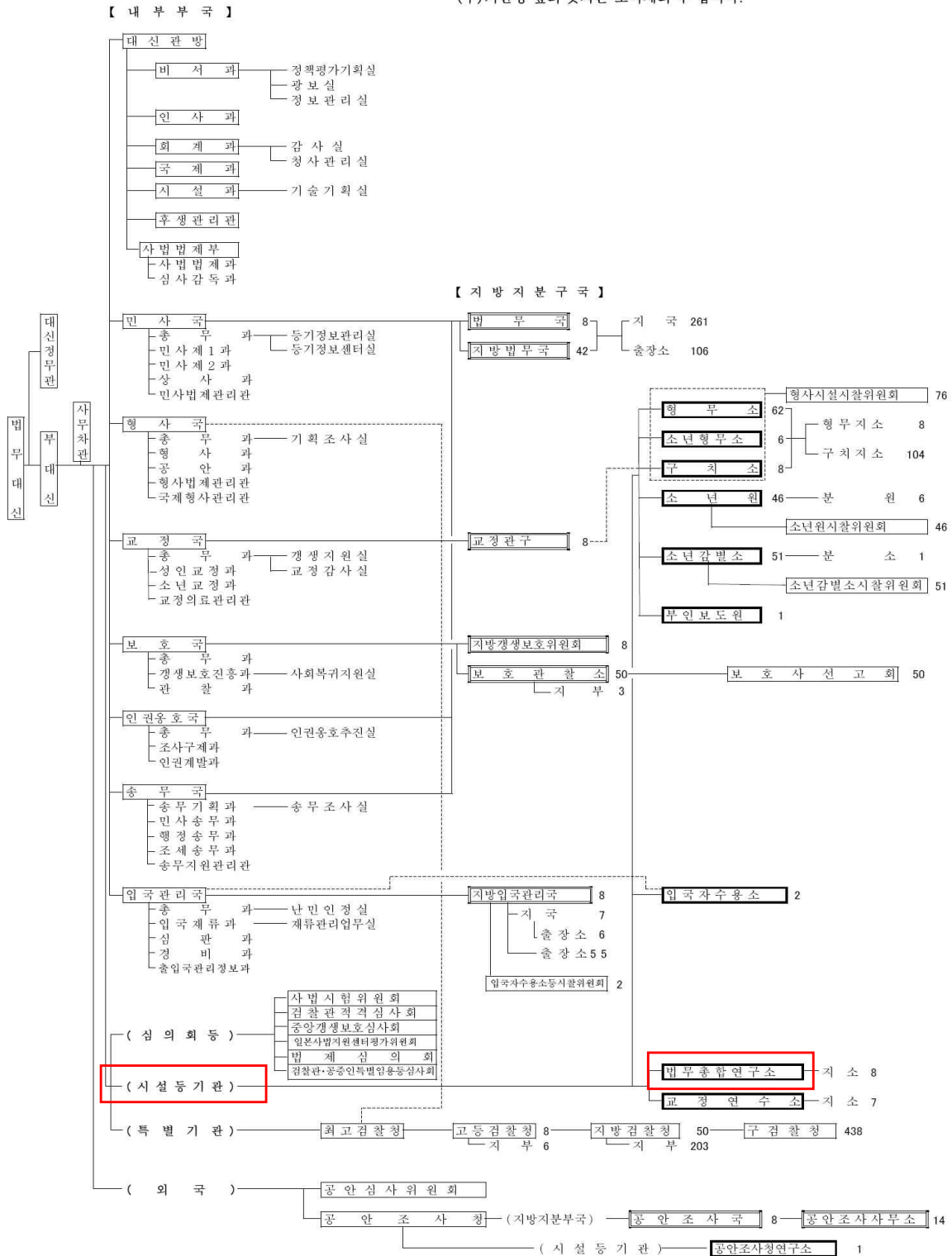
일본 행정부 조직도



법무성 조직도

(2018년 4월 5일 기준)

(주)기관명 옆의 숫자는 조직체의 수입니다.



3

외국 법제기관과의 법제 교류 · 협력 실적('18. 5월 기준)

○ MOU 체결 실적: 총 14개 국가, 24건(정부기관: 19, 대학 등: 5)

제 목	서명 (일자, 장소, 계기)	서명인사	발효	체결취지
대한민국 법제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간의 법제 교류·협력 회담 비망록	2006.11.8 북경 (법제처장 방중 계기)	.우리측:법제처장 (김선욱) .중국측:국무원법제 판 공실주임 (조강태)	2006. 11.8	양측 법제기관 법제 교류 협력 강화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09.10.29 타쉬켄트시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방문 계기)	.우리측:법제처장 (이석연) .우즈베키스탄측:법무 부장관(라브산 무히트디노프)	2009. 10.29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대한민국 법제처와 말레이시아 법무처 간 협력 서신 교환	2011.6.1 말레이시아 푸트라야자 (법제처장 말레이시아 방문 계기)	.우리측:법제처장 (정선태) .말레이시아측:법무처 장(압둘 가니 파타일)	2011. 6.1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 제공 협력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와 대한민국 법제처간 협력 양해각서	2011.6.2 싱가포르 (법제처장 싱가포르 방문 계기)	.우리측:법제처장 (정선태)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측:회 장(정영수)	2011. 6.2	양측간 법제정 보 제공 및 상호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몽골 국회법사위 간 협력 양해 각서	2011.9.23 서울 (몽골 법사위원장 한국 방문 계기)	.우리측:법제처장 (정선태) .몽골측:법사위원장(도 르지 오드바야르)	2011. 9.23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 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캄보디아 법무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11.11.9 인천 (캄보디아 법무부장관 아시아법제포럼 참석 계기)	.우리측:법제처장 (정선태) .캄보디아측 법무부장관 (양봉바따나)	2011. 11.9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미얀마 법무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11.11.9 인천 (미얀마 법무부 실무자 아시아법제포럼 참석 계기)	.우리측:법령정보정책 관(이강섭) .미얀마측:과장 (낭 킨 키키)	2011. 11.9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법제처 - 중국정법대학 법제업무 교류 · 협력 양해 각서	2011.12.9 서울 (정법대학 총장 법제처 방문 계기)	• 우리측:법제처장 (정선태) • 정법대학측: 총장(황진)	2011. 12.9	한 · 중 공동연구 등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	2012.5.16	• 우리측:법제처장	2012.	한 · 중 공동연구

제 목	서명 (일자, 장소, 계기)	서명인사	발효	체결취지
중국인민대학 법제업무 교류·협력 양해 각서	북경 (법제처장 방중 계기)	(정선태) • 인민대학측: 교무위원회 주석 (정천권)	5.16	등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법령정보 제공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크라이나 법무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12.6.27 고양시 (우크라이나 법무부장관 한국 방문 계기)	• 우리측:법제처장 (정선태) • 우크라이나측: 법무부장관 (올렉산드르 라브리노비취)	2012. 6.27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12.6.28 고양시 (베트남 법무부차관 한국 방문 계기)	• 우리측:법제처장 (정선태) • 베트남측: 법무부차관 (르탄롱)	2012. 6.28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 간 교류협력 의향서(LOI)	2013. 8. 2. 방콕 (법제처장 태국 방문 계기)	• 우리측:법제처장 (제정부) • 태국측: 내각사무처 사무차장 (추끼얏 랏따나차이찬)	2013. 8.2.	공평과 상호주의 에 입각하여 협 력, 적절한 절차를 거쳐 MOU에 서 명할 것임을 합 의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간 협력 양해 각서	2013. 10. 28. 서울 (입법조사 연구소장 한국 방문 계기)	• 우리측:법제처장 (제정부) • 우즈베키스탄측: 입법조사연구소장 (무하메도프 파루흐 에르클레비치)	2013. 10.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몽골 법무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14. 4. 25. 서울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 한국 방문 계기)	• 우리측:법제처장 (제정부) • 몽골측: 법무부 사무차장 (지그미다쉬 바야르체체그)	2014. 4. 25.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카자흐스탄 법무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14. 6. 19. 카자흐스탄 (법제처장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 우리측:법제처장 (제정부) • 카자흐스탄측: 법무부 장관 (이마셰브 마크히토비치)	2014. 6. 19.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카자흐스탄 인문·법률대학 간 협력 양해 각서	2014. 6. 18. 카자흐스탄 (법제처장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 우리측:법제처장 (제정부) • 카자흐스탄측: 인문·법률대학 총장 (나릭바예프 막스토비치)	2014. 6. 18.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2014. 11. 17.	• 우리측:	2014.	양측 법제분야

제 목	서명 (일자, 장소, 계기)	서명인사	발효	체결취지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 간 협력 양해 각서	서울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장 법제처 방문 계기)	법제처 차장 (황상철) • 벨라루스측: 국립법령정보센터장 (안드레이 가예프)	11. 17.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 간 업무협약서	2015. 4. 3. 세종시 (베트남 법무부장관 법제처 방문 계기)	• 우리측: 법제지원단장 (정영조) • 베트남측: 인사조직국장 (레 티엔 짜우)	2015. 4. 3	기 체결한 교류협 력 양해각서 체결 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간 협력 양해 각서	2015. 11. 4. 서울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차관 법제처 방문 계기)	• 우리측: 법제처장 (제정부) • 캄보디아측: 내각사무처 차관 (땃렛 썸라잇)	2015. 11. 4.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라오스 법무부 간 협력 양해 각서	2016. 3. 18. 라오스 (법제처장 라오스 방문 계기)	• 우리측: 법제처장 (제정부) • 라오스측: 법무부 장관 (분콧 상솜삭)	2016. 3. 18.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 간 협력 양해 각서	2016. 4. 27 서울 (태국 내각사무처장 방한 계기)	• 우리측: 법제처장(제정부) • 태국측 내각사무처장 (디스탐 훗라키타야)	2016. 4. 27.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콜롬비아 법무부 간 협력양해 각서	2017. 5. 1. 서울, 보고타 (외교행낭을 통해 MOU 체결)	• 우리측: 법제처장(제정부) • 콜롬비아측 법무부 장관 (엔리께 힐 보테로)	2017. 5. 1.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몽골 법무내무부 간 업무협약서	2017. 9. 14. 울란바타르 (법제처장 몽골 방문 계기)	• 우리측: 법제처장(김외숙) • 몽골측: 법무내무부 장관 (비암바축트)	2017. 9.14.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
대한민국 법제처와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간 업무협약서	2017. 9. 14. 울란바타르 (법제처장 몽골 방문 계기)	• 우리측: 법제처장(김외숙) • 몽골측: 몽골국립대 법과대학장 (에르데불강)	2017. 9.14.	양측 법제분야 교류 기반 마련 및 양국간 법령 정보제공 협력